# 울림홀 사용 관리 수칙

## 공간 명칭

● 울림홀

# 공간 목적 및 방향성

●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와 설비 제공

#### 이용시간

- 24시간 개방
- 전체적인 점검 또는 예약에 따른 리허설 및 세팅이 필요할 시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타 인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이 제한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된다.

## 예약 및 이용 규칙

-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개인/단체(동아리, 동호회, 자치단체, 학교 부서, 학과 등)만 예약이 가능하며, 행사의 대상이 전체 학내 구성원이어야 한다. 행사 대상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학생문화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Ex 홈커밍)
- 울림홀의 조명, 음향 설비, 프로젝터 등 준비실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45 일 전 21 시부터 14 일 전 21 시까지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홈페이지에 예약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기 3 일 전 21 시까지 홈페이지에 예약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 특정 개인/단체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단체의 사용 횟수를 리허설 포함 주 2 일(1 주의 기준은 월요일)로 제한하며 행사 당일을 제외한 리허설 시간은 2 시간으로 제한한다. 단, 학생 다수의 복지 및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또는 학교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 하에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 주말 및 공휴일에 조명 및 음향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가 가능한 근로 장학생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측에서 확인한다. 근로가 가능한 근로장학생이 있는 경우 사용 단체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장학생의 기준에 따른 보수(시급 12000 원)를

사용시간에 맞게 근로장학생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단, 공연 집중기간에 한해서는 시급 지급 없이 주말 및 공휴일에 근로 장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리허설, 장비 세팅, 예약 이용 후 뒷정리 및 청소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단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 예약이 되어있는 시간은 해당 단체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이 주어진다. 예약이 없을 시, 모든 학우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자가 예약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 이용자에게 허가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또한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사에 대해 근로 배정 결과를 사용 단체에 공지한다. 사용 단체는 근로 장학생에게 연락을 통해 공연세부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 예약이용 시,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이용현황 및 수칙 준수에 대해 관리감독 할 수 있다.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3월,5월,11월을 공연 집중기간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예약을 협의를 통해 미리 신청 받는다.
-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시에는 장비 사용의 경우 14일전 21시, 장비 미사용의 경우 1일 전 21 시까지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게 통보 해야 한다.
- 학교 공식 시험기간 1주 전부터 시험기간 종료일까지는 장비를 이용하는 예약이 불가하다.
- 사용 단체의 요청이 있을 시 공연 전날 무대 세팅이 가능하다. 무대 세팅 이후에는 공간 내부에 타 학우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울림홀 사용 단체는 예약 승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 단체는 공간 사용 1일전 21시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예약을 불허한다. 사용 이후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뒷정리를 확인한 후 홀 내부의 상태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 기본:5만원

■ 스낵 반입: 15 만원

■ 음식물 및 주류 반입 : 50 만원

-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시 집중공연기간 추첨에서 후순위 배정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 예약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공지 없이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예약 취소를 늦게 공지할 경우
  - 뒷정리가 심각하게 미흡할 경우
  - 그 외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혹은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시 예약에 제한을 줄 수 있다.(한 학기 사용 정지)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
  - 울림홀 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 금지사항

- 영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목적이 명확한 자선행사, 축제 등)
- 울림홀 내부 설비를 고의적으로 파손할 경우, 당사자가 변상해야 하며, 예약된 행사의 경우 책임자가 변상하도록 한다.
-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 관리수칙

- 집중공연기간 이전 정기적으로 비품점검 및 장비 점검을 한다.
- 예약이용 시, 최소 1 인 이상 감독 및 도움을 준다.